

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

[시행 2023. 9. 22.] [국토교통부훈령 제1660호, 2023. 9. 22., 일부개정.]

국토교통부(광역교통정책과), 044-201-505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개선대책"이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말한다.
2. "대중교통"이란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.
3. "대중교통수단"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.
4. "대중교통시설"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버스터미널·정류소·차고지·버스전용차로 등의 시설 및 공작물을 말한다.
5. "도로"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.
6. "접속시설"이란 나들목(IC), 분기점(JC), 지하차도, 삼거리 및 사거리, 램프,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(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② <삭제>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지침은 광역교통특별대책(이하 "특별대책"이라 한다)의 수립권자가 법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(이하 "특별대책지구"라 한다)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.

제2장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

제4조(특별대책 작성체계)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별표 1의 내용체계에 따라 특별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조사 및 분석)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.

1.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이행 현황
2. 특별대책지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광역교통 현황
 - 가. 주요 도로구간 및 접속시설 소통 현황
 - 나. 대중교통 운영 현황
 - 다. 대중교통 이용실태(주요 지점별 통행시간, 주요 노선별 이용수요, 침두시 교통수단의 혼잡률 등을 포함한다)
3.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분석
4. 그 밖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교통수요 예측)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필요 시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시에는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교통수요 예측 결과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분석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7조(대중교통 개선방안)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특별대책지구 개선대책의 주요 교통시설 지연에 따른 교통불편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방안
2.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
3.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연차별 운영 및 건설, 관리방안
4. 대중교통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방안

5. 대중교통 개선방안 이행으로 인한 기대효과

6. 그 밖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개선방안의 사업별 사업비, 시행시기, 시행주체 등 사업내용을 특별대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대중교통 개선방안 수립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, 개발사업 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) 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은 「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」(이하 "개선대책지침"이라 한다)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광역교통위원장"은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, "개선대책"은 "법 제7조의8에 따른 특별대책"으로 본다.

제9조(특별대책의 변경) ①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특별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특별대책의 내용을 인용(引用)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.

② 법 제7조의8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영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고, 검토 결과 같은 지침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직접 수립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특별대책의 시행) <삭제>

제3장 보칙

제11조(재검토 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379호, 2021. 4. 8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60호, 2023. 9. 22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특별대책의 내용체계(제4조 관련)

1. 서론

- 가. 개발사업의 개요
- 나.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
- 다. 특별대책 목표 및 추진방안
- 라. 특별대책 요약

2. 조사 및 분석

- 가. 특별대책지구의 개선대책 이행 현황
- 나.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
- 다.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문제점 분석
- 라. 그 밖에 특별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내용

3. 교통수요 예측(단, 필요에 따라 수요예측을 수행한 경우)

4. 대중교통 개선방안

- 가. 대중교통수단 확충 및 개선방안
- 나.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
- 다. 연차별 운영 및 건설, 관리방안
- 라. 자원 조달방안
- 마. 기대효과
- 바. 그 밖에 대중교통 개선방안